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결정사안】

전북 부안군 위도 섬에 거주하는 납북귀환어부 강대광이 귀환 10년 후 군사기밀을 탐지 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그의 친구들 5명은 강대광과 탈출을 예비하거나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으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기소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대광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사람들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형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1968. 납북되었다가 월선을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섬마을 사람들을 10년 후 다시금 수사기관에서 불법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탈출예비, 탈출음모, 북괴찬양, 국가기밀 탐지 등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하여 기소, 사법부에서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2.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직원들과 전북도경 대공과 대공분실 요원들은 피해자들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고, 일부 경찰관은 검찰 측 증인들을 협박하여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강요하는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

3.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직접 부안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며, 따라서 위 부안경찰서 직원들이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의견서를 기초로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정읍지원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광주고등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

인하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의존하여 유죄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찬양고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강대광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렸다.

5. 사건은 납북귀환어부는 마음만 먹으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고, 납북귀환어부와 접촉을 하면 언제든지 함께 엮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세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케 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접촉을 꺼려 섬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처벌을 받은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섬마을 전체에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6. 따라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근거로 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처벌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바-1286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신청인】 강대광 외 5명

【결정일】 2007. 6. 1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강대광은 1968. 7. 3. 경 7.5톤급 목조기관선인 태영호에 승선,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를 잡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의 경비정에 나포되어 약 4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으나, 수산업법(어로저지선 침범) 및 반공법(탈출)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¹⁾



1978. 12. 중순경 부안경찰서는 강대광(당시 36세)이 거주지인 위도에서 멸치 어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1974년 백옥길, 이용술과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하고, 수덕호에 승선하여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1976년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 등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1970년부터 1978년 사이에 거주지인 위도 주변의 해안경계 상황 등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는 혐의로, 백옥길(당시 37세), 이용술(당시 36세)이 위 탈출예비음모 및 위 찬양고무를 불고지하였다는 혐의로, 이일남(당시 37세, 사망), 김영석(당시 36세), 김근영(당시 36세)이 위 찬양고무를 불고지하였다는 혐의로 강제 연행하여 조사를 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송치하였다.

정읍지청이 기소를 하여 1979.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강대광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백옥길, 이용술에게 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에게 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강대광 등이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79. 11. 23. 광주고등법원은 강대광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백옥길, 이용술에게 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에게 각 항소기각을 선고하였다.

강대광 등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80. 3. 11.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강대광은 그 형을 복역하다가 만기 1년 전인 1987.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신청인 강대광, 김영석, 이용술, 백옥길, 김근영, 서순덕(피해자 이일남의 처)은 2006. 2. 8.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의혹 사항

1. 불법감금 여부

강대광은 약 39일 동안,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은 약 26일 동안, 김영석, 김근영은 2차례에 걸쳐 약 10일 동안 불법감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강대광 등은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 및 전북도경 대공분실 직원들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1)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 12. 5. 위 사건에 대하여 허위조작된 것으로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

3.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강대광 등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였으며,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고 허위자백하여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Ⅲ.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의 범위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생명권 침해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조작 사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본법 제2조제2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확인된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 10. 24.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Ⅳ.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사건 내용,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사, 공판기록을 비롯하여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검토하였고, 피해자, 수사경찰, 마을주민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1. 자료조사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문 : 총 58쪽
 - 사건의 개요, 판결내용, 판결에 인용된 증거자료 등 확인
- 전주지검 정읍지청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 총 1,509쪽
 - 사건 발생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 증거자료, 진술내용 등 확인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 총 18쪽
 - 불법감금 장소인 서울여인숙 및 신원여관 위치 확인

2. 진술청취

- 피해자 진술
 - 강대광, 백옥길, 이용술, 김영석, 김근영, 이일남(사망)의 처 서순덕 등 6명
-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의 진술
 - 전 부안경찰서 정보과 직원 6명 총 8회
 - 전 전북도경 대공과 직원 3명 총 5회
- 마을주민 등 참고인 진술
 - 김일남, 최상순, 강대훈, 백은기, 이기병, 윤희욱, 김남채, 이정규, 강대남, 이종순 등 10명
- 사건 관련자 중 진술청취 불가자
 - 사건 담당 검사, 사건 담당 변호인 사망
 - 전북도경 대공분실 직원 신○○, 부안경찰서 직원 황○○ 사망
 - 부안경찰서 정보과 김○○, 직원 안○○ 질병
 - 피해자 김옥섭, 참고인 김장섭, 박태용, 이창영 사망²⁾

2) 김○○은 강대광 등과 친구이자 육성계 계열이었고, 김○○은 김장섭의 동생인. 둘은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부안경찰서에서 진술함. 하지만 김○○은 공소시효 완료라는 중정의 조정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김○○은 불고지죄로 기소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 박태용, 이창영은 강대광이 수택호를 타고 북한으로 탈출하려 하였다는 정황에 대해 부안경찰서에서 진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부안경찰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V. 조사결과

1. 수사과정

가. 수사착수의 경위

이 사건은 1978. 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소재 최상순의 가게를 방문한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소속 위도 전담 경장 안○○에게 최상순이 “강대광의 말처럼 우리도 이북 같이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앞면 뒷면을 맞추어 속성으로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말하자,³⁾

안○○이 정보3계장 김○○에게 정보보고를 하고, 1978. 12. 8.부터 강대광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⁴⁾ 그런데 1978. 12. 16. 강대광을 부안경찰서로 소환한 뒤 전북도경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보고”를 하였다.⁵⁾

전북도경 대공과장 박○○는 즉시 치안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대공과 대공2계 반장 김○○에게 부안경찰서 직원들이 수사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대공과장의 지시를 받은 김○○은 당일 부안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북귀환어부 심사카드”에 적힌 사항을 보면서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할 내용 등에 대해 조언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였다.

나. 부안경찰서

부안경찰서 정보3계 수사관들과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다른 관련자들을 연행하여 부안경찰서 정보과 사무실, 신원여관, 서울여인숙, 전북도경 대공분실 등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부안경찰서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1979. 1. 24.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대광, 이용술, 백옥길,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을 부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였으며, 1979. 2.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정읍지청

정읍지청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인 1979. 1. 18.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과장실에서 피해자 강대광에 대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1979. 1. 19. 피해자 이용술, 백옥길, 이일남에 대한

3) 최상순 2회 진술청취 2007. 1. 10.

4)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과장 김○○, 직원 이○○, 박○○의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5) 전북도경 대공과 김○○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각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1979. 1. 30. 피해자 김영석, 김근영에 대한 각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송치일인 1979. 2. 2. 전원에 대해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한 후, 1979. 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기소(검사 김남옥)하였다.

2. 재판과정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79. 1. 14. 제1차 공판을 시작으로 3. 28. 제2차, 4. 11. 3차, 4. 25. 제4차, 5. 9. 제5차, 5. 16. 제6차, 5. 23. 제7차, 5. 30. 제8차, 6. 13. 제9차, 6. 27. 제10차, 6. 29. 제11차, 7. 10. 제12차 공판을 진행하였고,

1979. 7. 16. 강대광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백옥길, 이용술에게 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에게 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재판장 심의섭 판사 유창석 유정주)하였다.

나. 광주고등법원

위 판결에 대하여 전원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5차례의 공판을 거쳐 1979. 11. 23. 강대광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백옥길, 이용술에게 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에 대한 항소는 기각(재판장 윤관, 판사 이태우 임현택)하였다.

다. 대법원

위 판결에 대해 전원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80. 3. 11. 상고를 기각(재판장 대법원 판사 안병수, 대법원 판사 양병호 유태홍 서윤홍)하였다.

3. 수사과정의 위법성

가. 불법감금 여부

1) 공판정에서의 진술

강대광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차 공판에서 “1978. 12. 16. 이후 한 달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상고이유서에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이용술은 탄원서에서 “낮에는 부안경찰서 정보과에, 밤에는 서울여인숙에 꿰어앉혀 놓

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약 1개월 동안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가) 피해자 진술

강대광은 “결혼기념일인 1978. 12. 15.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직원 안○○가 “내일 잠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부안경찰서로 나오라”고 하여 다음날인 12. 16.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안○○가 자술서를 쓰라고 하였고, 그날부터 낮에는 경찰서, 밤에는 신원여관에서 자술서를 썼는데 경찰관 4명이 2인 1조로 밤낮으로 감시를 하였다고 하며,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서도 며칠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술서와 조서를 작성했고, 감금된 상태에서 자술서를 쓰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일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안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백옥길, 이용술은 “강대광이 연행되고 며칠 후 최재기 소유 여관에서 부안경찰서 직원들에게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시 이틀 뒤 부안경찰서로 연행되어 낮에는 부안경찰서, 밤에는 서울여인숙에 감금된 채 부안경찰서 직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자술서를 썼고,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끌려가서도 조사를 받았으며, 그 일은 구속될 때까지 약 30일⁶⁾ 동안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영석은 “국회의원 선거⁷⁾가 끝나고 2~3일 뒤 강대광이 부안경찰서 직원들에게 소환되어 갔고, 자신은 부안경찰서로 연행되기 10여일 전에 최재기 소유 여관에서 2일 동안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10여일 후 다시 부안경찰서로 연행되어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며, 10여일 후 또다시 연행되어 서울여인숙과 부안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 감금된 채 경찰관들의 감시 하에 자술서를 쓰거나 조서를 받다가 조사받은 지 3일 후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김근영은 “1978. 12. 경 최재기의 집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석방되었으나, 며칠 뒤 다시 부안경찰서 정보과로 연행되어 여인숙에 감금된 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교대로 조사를 받았으며, 3일째 되던 날 오후에 석방되었다가 10여일 후 또다시 부안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6)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의 부안경찰서 연행일은 1978. 12. 29. 이고, 구속영장 발부일은 1979. 1. 24. 이므로 불법감금은 26일 동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1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1978. 12. 12. 이다.



서순덕은 “1978. 12. 말 경 남편(이일남)이 부안경찰서 정보과로 불려갔다가 1979. 7. 중순경 정읍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고 진술하였고,

이종순은 “강대광이 끌려가고 난 후 마을 주민들 여러 명과 함께 부안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의 인솔하에 위도지서로 갔는데, 위도지서에서 다시 최재기의 집으로 데려가 골방에 몰아넣고는 잠 한숨 자지 못하게 하면서 자술서를 쓰도록 했고, 다음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최상섭, 김옥섭, 이정규, 김일남 등 10여명과 함께 부안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석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관 진술

수사관 이○○은 “강대광이 부안경찰청에서 아주 오랜 동안 조사를 받았고, 진북동으로 기억되는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부안경찰서 직원들이 교대로 안가에 가서 강대광을 감시하였으므로 안가에서도 장기간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고, 강대광 외에 다른 사람들도 불법으로 여인숙 등지에서 수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관 김○○은 “낮에는 정보3계 사무실에서 안○○, 정보3계장 등이 강대광을 수사하였고 밤에는 신원여관 등에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강대광이 부안경찰서로 연행되고 며칠이 지나서 백옥길 등이 연행되어 왔는데 부안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영장도 없이 인신을 구속한 채 서울여인숙 등지에서 수사하였고, 강대광을 40일 이상, 백옥길 등을 30여일 정도 불법감금하고 수사하였으며,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데려가 수사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 김○○은 “강대광은 안○○, 박○○, 정보3계장 등이 조사하였고, 자신은 강대광 외의 사람들을 조사하였는데 낮에는 부안경찰서에서 밤에는 여인숙에서 자술서를 받았으며, 돌아가면서 2명이 1조가 되어 그들을 감시하였으므로 조사기간이 20여일은 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박○○은 “강대광이 소환된 후 날마다 자술서를 받았으며 하루에 두 세 번씩 받기도 하였기에 몇 회나 자술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받은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계장에게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자술서와 신문조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부안경찰서 정보과장 김○○은 “구속영장도 받지 않고 내사공작 승인만으로 강대광을 연행한 것이어서 잘못된 행동이며, 구속영장이 없으니까 유치장이 아닌 여관에 편법으로 강대광을 감금시켜놓고 수사한 것이며, 주간에는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사무실

에서 수사하였는데 3계장 김○○의 지시로 형사들이 교대로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수사기록 검토

수사기록에 의하면,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수사관들은 1978. 1. 14. 강대광, 1978. 1. 16. 백옥길, 1978. 1. 17. 이용술, 1978. 1. 20. 김영석, 이일남, 1978. 1. 21. 김근영의 자술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사실상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구속영장은 1979. 1. 24. 발부되었다. 자술서는 강대광 등이 오래 전에 말하고 들은 사실을 연, 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여 순서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정리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피해자들이 신원여관, 서울여인숙, 부안경찰서 정보과 등에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과 수사관들의 진술, 수사기록상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대광은 1978. 12. 16.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9. 1. 24.까지 39일 동안, 이일남, 백옥길, 이용술은 1978. 12. 29. 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9. 1. 24. 까지 약 26일 동안, 김영석, 김근영은 1차 연행일 1979. 1. 4.부터 3일, 2차 연행일 1979. 1. 17.부터 구속영장발부일 1979. 1. 24.까지 7일, 합계 10일 동안 부안경찰서 정보과 수사관들에게 구속영장 없이 신원여관, 서울여인숙, 부안경찰서 정보과 사무실,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불법감금 된 채 수사관들의 감시를 받으며 자술서를 쓰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를 구성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고문 등 가혹행위 여부

1) 공판정에서의 진술

강대광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차 공판에서 “8일 동안 상황실에 대기시켜 놓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동 공판에서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은 “부안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했고, 강대광을 잡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백을 하라고 하기에 허



위로 자백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차 공판시 재판장이 수사관 안○○에게 강대광의 손을 보여주게 하며 “강대광의 손이 고문에 못 이겨 다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안○○는 “증인은 아는 바 없으며 고문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2)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가) 피해자 진술

강대광은 “부안경찰서 정보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첫날밤에 안○○가 팬티까지 모두 벗긴 다음 검정색 고무호스로 구타하였고, 10일쯤 지나서부터는 8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김○○ 3계장과 안○○가 양쪽에서 머리를 잡고 물이 가득 든 방화수통에 머리를 처넣었고,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그 위에 물을 뿌리는 물고문을 하였으며, 팬티도 입히지 않은 채 의자에 양팔을, 의자다리에 양발을 수갑으로 채운 뒤 전기고문을 하였고, 알몸 상태로 정보과 사무실 출입문 밖에 세워두고 몸에 물을 뿌려 기절하기도 했으며, 전북도경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서는 대공분실 직원 백○○⁸⁾에게 며칠 동안 전기고문을 당하였고, 그 곳에서 정보3계장 김○○이 각목으로 내리치자 무의식적으로 오른팔로 머리를 감싸다가 손가락을 맞아 세번째와 네번째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⁹⁾

백옥길은 “부안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강대광으로부터 찬양고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안○○가 뺨을 때리고 발로 찼고, 여관과 부안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에 감금하고 자술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글을 몰라 쓰지 못해 매일 맞고 지냈고,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이용술, 이일남과 함께 끌려가 건장한 남자 3명에게 전기고문을 당했고, 이용술과 이일남도 차례로 불러나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용술은 “부안경찰서 정보과에서 형사들이 강대광이 북한에 다녀와서 너에게 한 말을 들은 대로 쓰라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곤 하였고, 여관에서는 형사들이 우리들에게 방바닥에 엎드려 자술서를 쓰라고 하고는 자기들은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 우리를 두들겨 뺐고, 백옥길, 이일남과 함께 전주 대

8)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사건 당시 전북도경 대공분실 근무자로서 실제 이름은 백○○였고, 대공분실 김○○과 함께 이 사건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9) 이와 관련하여 강대광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전주중앙병원 의사 강○○, 작성일자 기재 없음)에는 “과거력상 우측수지 3번 수지 골과 우측수지 제4번 중수골이 골절되었으나 현재 유합된 상태”라고 쓰여 있고, 수사관 김○○은 강대광이 부안경찰서에 연행되었을 때는 손가락이 부러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이일남, 백옥길, 자신의 순서로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김영석은 “부안경찰서로 1차 연행된 날 식사를 마치고 황○○ 형사¹⁰⁾가 여관으로 데리고 가더니 강대광이 북한을 다녀와서 했던 말을 쓰라며 양 어깨를 손으로 내리치고 뺨을 수없이 때렸고, 코피가 나자 부안경찰서 정보과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김근영이 옆에 앉아서 자술서를 쓰라고 하였다. 그 때부터 3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자술서를 썼다. 전주에서 나온 주임, 정보3계장, 그리고 2명의 형사가 있는 여관 3층으로 끌려가 뺨을 마구잡이로 구타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김근영은 “정보과장이 내 자술서를 보더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쓰라고 욕박질렀고, 조그만 사무실로 데려가 몽둥이로 두들겨 뺨으며, 계장이라는 사람이 권총을 꺼내 가슴팍에 대고는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자술서를 쓰라고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술서를 썼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서순덕은 “남편 이일남이 정읍지청에 있을 때 면회를 하였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시커멓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온몸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몸을 거의 쓰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종순은 “부안경찰서 직원에게 최재기의 집으로 연행되어 최재기 집 골방에 쪼그려 앉아 자술서를 썼는데 형사가 자술서를 찢어버리고는 뺨을 때렸으며, ‘강대광이가 이북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냐’, ‘강대광이를 대면해 줄까 똑바로 써라’고 하였으며,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세계 비비고 돌리면서 ‘이종섭¹¹⁾이 네 동생이지, 물고문을 해야 말을 들을 놈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강대훈은 “강대광이 잡혀가고 한참 후 부안경찰서에서 이름을 모르는 형사에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몽둥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정규는 “부안경찰서에서 정보과장이 바른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구둑발로 정강이를 사정없이 찧기 때문에 정강이에서 피가 났고, 감금된 여인숙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이창영이 지르는 비명소리와 경찰관이 욕하는 소리, 두들겨 패는 소리를 들었고, 석방되어 돌아올 때 이창영이 많이 맞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10) 서해 페리호 사건으로 사망.

11) 1968년 태영호를 타고 조업을 하다 강대광 등과 함께 납북되었다가 귀환하였음.



다) 수사관 진술

수사관 이○○은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백옥길 등을 감시하다가 잠이 오니까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전경 숙소에서 모포를 가져와 사무실 책상 위에 깔아놓고 화투를 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김○○은 “동료 직원들로부터 강대광이 조사를 받으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맞았다는 소리를 김영석이나 백옥길로부터도 몇 번 들었다. 강대광, 백옥길 등을 여인숙에서 감시할 때는 지루하고 하니까 자주 화투를 치고 맥주도 한잔씩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강대광을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데려갈 때는 정보3계장의 인솔하에 담당 직원 안○○와 박○○이 같이 갔을 것이고, 전북도경 대공분실에는 전기고문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야구방망이가 진열장 안에 있었고, 손을 묶은 후 발도 가지런히 모아서 묶을 수 있는 침대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박○○은 “신원여관에서 안○○ 형사와 함께 밤낮으로 강대광에게 자술서를 받았으며, 자술서를 받으면서 날을 샌 날도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김○○은 “강대광 등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다가 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대공분실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해준 뒤 도경으로 가버렸고, 그러면 대공분실에서 조사한 직원들이 그들을 다시 조사하여 범죄사실을 자백받은 후 나에게 다시 진술조서를 받아달라고 하면 대공분실로 가서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당시 강대광은 대공분실에서 3-4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김○○은 “강대광이 복한을 찬양하였다는 첩보만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행하여 여관에 불법감금하고 수사하였으므로 무리한 수사가 되었던 것이어서 수사에 참여한 정보3계장 등 부안경찰서 경찰관들이 강대광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간다”고 진술하였다.

전북도경 대공분실 직원 ○○○은 “강대광이 간첩혐의를 부인하자 본인이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신○○이 경찰봉으로 강대광을 때렸을 것이라는 정황도 충분히 인정되고 찬양고무 정도였던 강대광 사건이 간첩사건까지 되었던 것으로 보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봉으로 때리기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수사기록상의 정황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대광이 찬양고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일시, 시간, 장소, 찬양고무의 내용과 그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이 정확

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은 피해자들의 임의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강대광의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사무실과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 백옥길, 이용술의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구타 및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진술, 참고인 이종순, 이정규, 강대훈 등의 고문을 받았다는 진술, 전북도경 대공분실 직원 ○○○의 일부 가혹행위를 인정한 진술, 수사관 김○○의 일부 가혹행위 가능성 인정 진술을 비롯한 수사관들의 진술, 강대광의 우측 수지 3, 4골 골절과 봉합되었다는 전주 중앙의원 의사 강○○의 소견, 수사관 김○○의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비치된 고문도구에 대한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직원들과 전북도경 대공분실 직원들이 강대광,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을 수사하면서 주먹과 발, 몽둥이로 구타, 잠 안재우기,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김근영, 김영석 등을 수사하면서 구타,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고문 등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가. 판결 모두사실

1) 문제의 소재

강대광이 1968. 10. 20. 북한 노동당에 가입 후 지령을 받고 은폐하여 잠입하였고, 지하망인 육성계 및 위친계를 구축하였으며, 해변에 나가 북한의 공작선과 접선기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소결

1968. 태영호가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직후 강대광, 정몽치, 박종옥, 박헌태, 박종윤, 박상용, 강용태 7명은 여수경찰서, 순천지청, 정읍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 억류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지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10여년이 지난 후 이 사건에서 문제 삼고 있다.



강대광은 탄원서(1979. 9. 24.자) 및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입당 원서는 안○○ 형사가 종이에 그려 문구까지 적어주고 베끼라고 하여 그대로 베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 결과, 당시 정부에서 계모임을 금지하였는데 강대광 등이 교육계와 육성계를 하여 부안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순수한 목적의 계모임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 육성계는 거주지 주변에 사는 친구들끼리 자녀 학자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결성한 것이며, 위친계는 어업으로 생계를 해결하던 위도거주 주민들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가족이 사망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장례라도 지낼 수 있도록 결성한 것이고, 강대광이 계장이 된 이유는 멀치어장을 하기 때문에 강대광이 마을에서 멀리 떠날 필요가 없어 계원들이 시켜서 한 것이었다. 또한 강대광을 접선하기 위해 북한의 공작선이 나타난 사실 자체가 없다.

수사 및 재판기록에 의하면, 위 모두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강대광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이 유일한데, 경찰 및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가혹행위 또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어, 결국 위 모두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북한지역으로 탈출음모 여부

1)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강대광이 ① 1974. 4. 초순 및 1974. 7. 중순 백옥길에게 월북할 것을 권유하고, 백옥길이 이에 동의하여 북한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음모하고, ② 1974. 4. 초순 및 1974. 8. 초순 이용술에게 월북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용술이 이에 동의하여 탈출할 것을 음모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 진술

강대광, 백옥길, 이용술은 공판정 및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기로 음모하였다는 점에 대해 “경찰관들이 고문을 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부안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검사가 1차 피의자신문을 할 때 고문한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검찰에 송치되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경찰관들이 협박을 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백옥길은 “강대광과 탈출을 모의했다는 시기에는 박양조 등과 함께 백산기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여 바다에서 조업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용술은 “강대광과 탈출을 모의했다고 하는 시기에 김기군 소유의 어선을 탔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박양조는 광주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백옥길과 함께 백산기 소유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업중이었던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위 백산기는 광주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백옥길은 약 3년간 자신의 배에 승선하였는데 1974. 4. 초순이나 1974. 7. 중순에도 승선을 하였지만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아 정확한 승선 일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김기군은 광주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74. 4. 초순에는 이용술, 김근영과 함께 배를 탔는데 2. 경부터 6. 경까지는 조업기간이므로 출어중이었을 것이며, 4. 경에는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한 것으로 안다. 한번 출항하면 보통 15일에서 16일 조업하고 귀항하나 빠른 경우 11일에도 귀항하고, 귀항 후에는 1~2일 쉬고 다시 출항을 한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검찰직원 천○○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검찰 신문시 경찰관들이 참여한 이유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였으며, 검사가 일선 경찰서로 가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유는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사 앞에서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소결

강대광 등이 불안경찰서 수사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아 탈출을 음모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 송치 전 1979. 1. 18. 강대광, 1979. 1. 19. 이용술, 백옥길에 대한 검사 작성의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불안경찰서 정보과 장실에서 작성하였는 바, 검찰 송치일 이전에 경찰서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다.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고, 가혹행위로 인한 강압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대광 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했던 경찰들이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석하여 진술 내용을 반복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가혹행위로 인한 두려움이 계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즉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강대광 등이 북한으로 탈출을 음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북한 지역으로 탈출예비 여부

1)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강대광이 1974. 10. 16. 위도에서 선원 5명과 어선 수덕호(5톤)에 승선하여¹²⁾ 어청도 해상에서 2일간 어획물을 훔치려다 실패한 후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결심하고, 약 30분 가량 서북방으로 향진하였으나 기관장 박태용이 악천후로 인하여 더이상 항해할 수 없다고 저지하여 탈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 진술

강대광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공판정, 항소이유서, 광주고등법원 공판정에서 위 범죄 사실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강대광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수덕호 정도의 5톤급 15마력 배에 기름 1드럼을 싣고 가는 기름이 부족하여 연평도까지 가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관들이 당시 부안군 줄포면에 사는 박태용을 부안경찰서로 연행하여 박태용에게 ‘선장인 이창순을 제쳐두고 강대광이 직접 운전을 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한 것을 본인이 만류하여 되돌아왔다’고 진술케 한 후 박태용의 진술조서를 보여주면서 인정하라고 자신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당시 수덕호 기관장 박태용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대광이 1974. 10. 16. 30분 가량 서북방으로 향진하는 것을 일기도 나쁘고 기름도 없고 하니까 돌아가자고 제지한 일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2차 공판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하였으나, “서북방으로 이동할 때 선장 이창순, 선주 강대광, 선원들이 교대로 키를 잡았다”고 증언하여 일방적으로 강대광이 북한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또한 “1979. 1. 18. 부안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진술은 자신이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였다.

당시 수덕호에 함께 승선한 이창영(선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덕호 운전은 이창순(선장)이 하였으며, 강대광이 향진하자고 하는 것을 기관장 박태용이 제지한 일이 있으나 강대광이 이북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12) 당시 승선자는 박태용, 이창순, 이정규, 강용태, 이창용, 박중화, 강대광 7명으로, 백옥길, 이용술은 승선하지 않았다.

수덕호에 승선하였던 이정규(선원)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대광이 박태용에게 협박하면서 이북으로 가자고 한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차 공판에서도 “강대광이 이북으로 가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 이정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¹³⁾에서 “동이 틀 무렵 바다 생활을 오래하여 경험이 많은 선장 이창순이 선주 강대광에게 날씨가 나쁘다며 돌아가자고 하여 왕등도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강대광이 무작정 서북 방향으로 향해하려는 것을 박태용이 제지하여 싸우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 형사가 시켜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기관장 박태용은 광주고등법원 2차 공판에서 “수덕호(5톤, 15마력)를 타고 일본어선 어획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기름 1드림을 싣고 갔는데, 기름 1드림으로는 연평도까지 가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1974. 4. 18톤급 어선 선주였던 김기군은 “5톤짜리 15마력의 배로 파장급에서 연평도까지 가려면 5드림 이상의 기름이 필요하고, 4노트 속도로 위도에서 연평도까지는 30시간이 소요된다고 증언하였다. 이창영은 수덕호로 위도에서 어청도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증언하였다.

부안경찰서 형사 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강대광과 박태용의 진술조서를 이정규, 이창영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진술하게 하는 ‘맞춤식 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소결

강대광이 부안경찰서 수사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아 탈출을 시도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혹행위로 인한 강압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대광이 키를 잡은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선장 이창순이 잡았다는 이창영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0차 공판에서의 증언, 이정규의 광주고등법원 2차 공판의 증언, 선장과 강대광 그리고 선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키를 잡았다고 한 박태용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강대광이 키를 잡고 서북쪽으로 향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강대광은 이창순, 이정규, 이창영, 박태용 등과 함께 수덕호를 타고 어청도 부근으로 항진하여 일본어선 어획물 및 어구를 훔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출발 이틀 후 아침 바다 생활에 경험이 많은 선장 이창순이 날씨가 좋지 않다며 철수하자고 하여 왕등도로 철수하

13) 박태용, 이창영, 이창순은 사망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하였다.



였을 뿐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결의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며,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강대광의 북한 찬양고무 여부

1) 문제의 소재

강대광은 ① 1976. 7. 20. 강대훈에게 “이북에는 건물도 좋고 공장도 참 좋더라”, ② 1977. 2. 12.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 및 김일남에게 “이북은 (집을 지을 때) 앞면 옆면 뒷면을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크레인으로 맞추기만 하면 된다”, ③ 같은날 이용술, 이일남, 김근영, 김영석에게 “내가 이북에 있을 때 소주 2홉짜리를 두 사람이 먹으면 그 맛이 좋고 독하여 빨리 취하고 속이 쓰리지 않는다. 우리와 같이 없는 어부들은 이북이 살기가 좋더라”, ④ 1977. 4. 초순 최상순, 김옥섭에게 “내가 남북당할 때 우리 배는 월선 조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선보다 남쪽에서 조업하고 있었다. 이북 경비정이 쏠살같이 쫓아와 나포할 때 어찌나 이북 경비정이 빠른지 잠깐 사이에 육지에 닿았다”, ⑤ 1977. 8. 9. 이용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에게 “우리 같이 없는 어부들은 이북에서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았으며 내가 이북에 있을 때도 술과 과일을 먹고 싶다는 말만 하면 얼마든지 주어서 먹었고 대우가 좋았다”, ⑥ 1978. 1. 13. 김옥섭, 최상순, 박헌태, 강대섭, 강대남, 박기석에게 “이북에서는 집을 지을 때 앞면 뒷면 옆면을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4~5층 건물도 며칠이면 지을 수 있어 건축기술이 여기보다 낫다”는 등으로 말하여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으며,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 김옥섭은 강대광으로부터 위와 같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진술

정읍지원 2차 공판에서, 강대광은 위 범죄사실 ②, ③, ④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한 일은 있으나 찬양고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10차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김영석은 “강대광이 북한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 이후에는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일남은 “강대광이 이북에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옥섭은 “강대광이 북한에 대해 말하는 것을 2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백옥길, 이용술, 김근영은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10차 공판에서 백옥길, 이용술, 이일남, 김영석, 김근영 등은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김옥섭은 광주고등법원 공판에서 “강대광이 이북 경비정이 좋고 빠르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백옥길, 이용술, 김영석, 김근영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나 고문 등 가혹행위와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정읍지원 3차 공판에서 증인 강대훈은 위 범죄사실 ①에 대해 “들었다”, 최상순은 ④와 ⑥에 대해 “들었다”고 각각 증언하였다. 김일남은 위 범죄사실 ②에 대해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10차 공판에서 증인 강대성, 강대남, 김일남은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최상순만은 3차 공판 때와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 김일남은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경찰 안○○가 강요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3회 공판에서도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위 강대훈은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나 부안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육성계를 한 날 강대광이 이북은 집도 좋고 공장도 좋고 건물도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라고 하여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강대광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읍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부안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경찰관들이 경찰에서 대답한 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하여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최상순은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지 못했으나 경찰관 안○○가 3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라고 하여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안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안○○ 형사가 증언할 내용에 대해 교육을 하여 그대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4) 검찰은 위 사실에 대해 김일남을 허위 증언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정읍지원은 위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또, 강대남은 “형사가 ‘강대광이 다 인정을 했는데 만약 부인을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으며, ‘인정을 하면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허위로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고 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갈 때 안○○ 형사가 ‘경찰서에서 진술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소결

강대광 등이 북한을 찬양고무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관의 협박이 지속된 상태에서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사기관이 협박을 하여 행해진 증인 강대훈, 최상순, 김일남, 강대남 등의 증언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찬양고무 조항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헌법상 평등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危害)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¹⁵⁾

위 강대광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건축기술, 소주, 경비정, 속옷, 휴양지 등이 남한의 그것에 비해 좋다는 단순한 의견진술로서 북한의 정치체제가 남한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선전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요소가 있는 조항을 확대 적용한 위법이 있다.

불고지의 전제사실인 강대광이 북한을 찬양고무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찬양고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마. 피해자 강대광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여부

1) 문제의 소재

판결에 의하면, 강대광은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① 1970. 1. 20.부터 1972. 3. 11.까지 육군 35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위도지서 소재지, 근무경찰관 수, 무기고, 예비군 등, ②

15) 헌법재판소 89헌가113(1990. 04. 02) 참조.

1973. 8. 23.부터 1974. 10. 10. 경까지 수덕호를 타고 안마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면서 해군 전진기지 소재지, 해군함정 2척의 해상경계 등, ③ 수덕호를 타고 곰소항을 왕래하면서 부안경찰서 경비정 3척의 경계업무 상황과 여객선들의 입출항 상황 등, ④ 1978. 3. 20. 부안경찰서 경비정 충무공에 승선하여, 경비정의 속력, 경비정 근무자 현황, 무기 배치 상태 등, ⑤ 1971. 7.과 1978. 6. 19. 2회에 걸쳐 남북어부 선도책으로 실시한 전라북도 주관 산업시찰단에 참가하여 1차 시찰시 해태제과, 유한양행 등의 공장소재지, 종업원 수, 작업내용 등, 2차 시찰시 남해대교 소재지, 여천공단 소재지, 대지 넓이, 창원기계 공단 소재지, 현대조선소 소재지, 현대자동차 공장 소재지 생산품 등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 진술

강대광은 부안경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차 공판에서 “떨치어장 일이 바빠 3~4차례 거절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산업시찰에 참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1차 공판시는 “경찰서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전면 부정하였다.

강대광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위도가 전라남도 소속이었으나 전라북도 소속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¹⁶⁾ 병역업무 착오로 인해 영장이 나오지 않아 나중에 입대하였고,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던 위도 청년들의 영장이 한꺼번에 나오자 방위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위도로 들어와 위도 백사장에서 교육을 시켜 현지에 근무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비정 충무공에 승선한 것도 산업시찰을 가자고 경찰관들이 위도 거주 남북귀환어부들을 데리러 왔을 때 타보았을 뿐”이며, 위 범죄사실 ④에 대해서는 “안○○ 형사가 적어주면서 인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고○○은 확인서에서 “강대광을 충무공호에 승선시켰다”고 하였고, 이창영, 이정규는 진술조서에서 “안마도에 해군전진기지가 있고 해군함대가 안마도 근해를 순항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수영은 위도면 대리에 분산무기고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최상순의 진술은 강대광이 꽃게잡이를 했다는 것이며, 백윤종의 진술은 산업시찰을 가서 목격한 것

16)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 소속이었으나, 1963년 전라북도 부안군 소속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이다.

위도지서 근무자 김○○¹⁷⁾은 정읍지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대광이 산업시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연락받은 일도 없고 강대광에게 연락한 일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정읍지원 6차 공판에서 백윤중은 “산업시찰을 다녀온 곳이 경찰과 검찰에서 강대광이 다녀왔다고 진술한 곳과 동일하다”는 증언과 “산업시찰 당시 강대광으로부터 뱃일로 바쁜 데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창영은 “해군경비정이 안마도 근해를 순찰한다는 것은 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안마도 근해로 수덕호를 타고 조업을 나갈 때 강대광이 기밀을 탐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수영은 “예비군 분산무기고 근무는 전 대원이 아는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였다.

4) 소결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강대광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증언은 강대광이 산업시찰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강대광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지령을 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 1968년 조사 당시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기밀을 북한에 전달할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0여 년간 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우연히 알게 된 사실만을 들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VI. 결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1968년 납북되었다가 월선을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회적 약자인 납북귀환어부와 섬마을 사람들을 10년 후 다시금 수사기관에서 불법연행한 후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하여 기소, 사법부에서 중형으로 처벌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안경찰서 정보과 수사관들이 강대광 등 피해자들을 10일 내지 39일 동안 여관, 부안경찰서 정보과,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불법감금한 채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

17) 강대광은 김○○이 산업시찰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를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부안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 직원들과 전북도경 대공분실 직원들이 강대광 등 피해자들을 구타, 잠 안재우기,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부안경찰서 및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백한 혐의내용을 송치받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의존하여 유죄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찬양고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강대광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렸다.

2. 권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하여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처벌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